

[일련번호 : 102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피복비 집행 및 지급관리 부적정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◻◻과는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·용역 및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의하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(작업복)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「지방회계법」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, 이에 회계서류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지급내역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아울러, 「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재정(피복비) 이행실태 점검 결과 통보」(감사담당관-2999(2025.3.25.)호)에 따라 피복비 집행 시에는 상세품목 영수증과 실착 사진 첨부, 물품검수조서 및 수불대장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□□과는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를 집행하였으며, 정당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령증 및 지급조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피복비 집행 및 증빙서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

[표] 피복비 집행현황

연번	지출품의일	적요	금액(원)	부적정 내역
1	20230523	○○○단체티셔츠(활동복) 구매비 지출	3,762,000	-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이 아닌 자(민간인 300명)대상 피복비 집행(예산 미편성)
2	20230801	○○○ 자원봉사자 조끼 제작 구매	3,118,500	-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이 아닌 자 (자원봉사자)에게 피복비 집행 (반납대장 미확인)
3	20230911	○○○자원봉사자 모자 구매	3,334,500	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□□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□□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피복비 집행 및 지급 관련 증빙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